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군무원인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,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4. ~ 6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방위사업청, 합동참모본부: 방위사업청장, 합동참모의장
2. 육·해·공군: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
3. 해병대: 해병대 사령관
4. 소속·직할부대 및 기관: 국방부 장관

제11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대상자, 대리인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

로 본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⑥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
제1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·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제1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4조의3(징계위원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
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
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

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재심사 청구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9조(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9조(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u>1. 방위사업청, 합동참모본부: 방위사업청장, 합동참모의장</u> <u>2. 육·해·공군: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</u> <u>3. 해병대: 해병대 사령관</u> <u>4. 소속·직할부대 및 기관: 국방부 장관</u>
제1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</u>

	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대상자, 대리인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<u>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</u>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⑥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제114조의2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(생략)	제114조의2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

<신설>	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·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제114조의3(징계위원회의 시 소지 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 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
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818